

의안 번호	532
----------	-----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(안)

검토보고서

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1. 24.

전문위원 강영숙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532호

다. 제출일자 : 2025. 11. 12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1. 14.

2. 제안이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,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 5조, 제6조)
- 라. 개인별 지역계획 수립, 통합지원 제공 절차 및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사항
(안 제7조 ~ 11조)
- 마. 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16조)
- 바. 사무의 위탁, 교육 및 홍보,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 ~ 1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- 다. 입법예고
 - 기 간 : 2025. 9. 25. ~ 2025. 10. 15.
 - 의 견 : 의견 없음.
- 라.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 -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 - 부패영향평가 : 개선권고사항 반영
 - 성별영향평가 : 개선의견 일부 반영
 - 아동영향평가 : 원안동의

구분	권고내용	반영 여부	개선안
부패 영향 평가	안 제13조제5항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- 위원 연임 횟수 구체적 규정	반영	제13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구분	권고내용	반영여부	개선안
	<p><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-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 규정 신설 	반영	<p>제14조(위원의 해촉 등) 위원의 해촉 및 제척·기피·회피 등 그 밖의 협의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
	<p>안 제15조(협의체 회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록 작성 및 보관 규정 신설 	반영	<p>제16조(협의체 회의)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.</p>
	<p>안 제16조(수당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당 조문 정비(지급 제외 대상 관련) 	반영	<p>제17조(수당)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</p>
성별 영향 평가	<p>안 제2조(정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호의 ‘통합지원 대상자’에 정신질환자 포함 제안 	미반영	<p>[미반영 사유] 상위법령(돌봄통합지원법)상 대상자 정의에 명시되어있지 않고,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대상자(65세 이상,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) 외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시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함</p>
	<p>안 제2조(정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호의 다목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명시 및 그 가족까지 대상 확대 제안 	미반영	<p>[미반영 사유] 조례 제2조의 ‘통합지원 대상자’는 통합돌봄 사업 대상 범위에 대한 정의이고, 제6조제1항 2호와 5호의 내용은 대상자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필요 시 정신질환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는 내용으로, 통합지원 대상자 정의에 정신질환 및 그 가족을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함</p>
	<p>안 제5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역계획을 수립할 시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 	미반영	<p>[미반영 사유] 조례 제5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의 내용은 돌봄통합지원 조직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제시한 개선의견은 제6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</p>
	<p>안 제6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통합지원 사업 추진 시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 	반영	<p>제6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 ① 구청장은 통합 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이 때,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및 유형 등 시민의 다양한 특성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</p>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조례안은 2026. 3. 27. 시행 예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」에 맞추어,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이 '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' 의료·요양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,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
- 참고로, 보건복지부에서는 '23.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, 현재는 우리 구를 포함한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며 본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.

성북구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

- 추진기간 : 2025. 7월~2026. 3월
- 대상자 발굴 및 신청 : '25. 9월부터~
- 대상자 :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·요양·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75세 이상 노인, 고령장애인
- 사업내용 :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의 성북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원스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
- 대상사업 : 5개 분야, 38개 서비스
- 분야별 사업추진부서

성북형 통합돌봄 조성 (총괄:복지정책과)

보건의료	건강관리·예방	장기요양	일상생활 돌봄	주거
· 건강보험공단	· 건강관리과	· 건강보험공단	· 복지정책과	· 건강보험공단
· 건강정책과	· 의약과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	· 생활보장과
· 생활보장과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		· 의약과	· 복지정책과
· 보건지소				· 어르신장애인복지과

□ 주요내용

가. 안 제1조(목적), 안 제2조(정의)

-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'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' 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목적을 규정하고, 통합지원, 통합지원 대상자,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 주요 용어를 명확히 함.

나.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함

다. 안 제5조(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), 안 제6조(통합지원 사업 추진)

- 구청장은 매년 지역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통합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관련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< 안 제6조, 통합지원 사업 추진 대상 사업 >

1.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·간호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
2. 노인성 질병, 만성질환, 장애,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
3.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
4. 퇴원자·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·건강관리 지원사업
5.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·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
6.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
7.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한 서비스, 보조기기 지원 등
8.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
9.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라. 안 제7조(개인별 지원계획 수립), 안 제8조(통합지원 제공 등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·안내하고,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통합지원 사업의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중복 또는 누락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마. 안 제9조(통합지원회의), 안 제10조(통합지원 창구 설치), 안 제11조(전담조직 설치),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·변경 등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하며,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합지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에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·운영하고, 통합지원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성북구 본청 내에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.

바. 안 제12조(통합지원협의체), 안 제13조(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), 안 제17조(수당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추진과 기관 간 연계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두고, 해당 협의체는 지역계획의 수립·평가, 시책 추진, 기관 간 연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도록 함.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구청장이 맡고,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고,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둠.

사. 안 제18조(사무의 위탁), 안 제19조(교육 및 홍보), 안 제20조(개인정보 등의 보호)

-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

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를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. 아울러 통합돌봄 업무 종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도록 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」에 따라, 노인·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'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' 의료·요양·건강관리·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또한 기존 분절적 서비스 제공을 통합·연계하여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며, 법 시행에 맞춰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리·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불임 1

성북구 노인인구 및 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

○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 : 총 85,746명 (20.2%)

(‘25.6.30.기준, 단위:명)

성북구 인구수	65세 이상 노인인구						
	합계	65~74세			75세 이상		
		소계	남	여	소계	남	여
424,030	85,746 (100%)	48,506 (56.6%)	22,262	26,244	37,240 (43.4%)	14,787	22,453

※ 출처 : 주민등록 인구통계

-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85,746명으로 전체인구 중 20.2% 차지, 성북구도 초고령사회(20% 이상) 사회 진입
- 요양·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37,240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43.4%를 차지

○ 치매진단자수

(2024.1.1.~12.31.기준 노인 중 치매진단자, 단위:명)

합계	65~74세			75세 이상		
	소계	남	여	소계	남	여
7,165	1,800 (25.1%)	542	1,258	5,365 (74.9%)	1,579	3,786

※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진단자료

○ 장기요양등급자수

(‘25.6.30.기준, 단위:명)

구분	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	등급외 (A,B)
연령대	7,796	423	896	2,273	3,419	679	106	698
65~74세	1,078 (13.8%)	80	115	292	479	93	19	206
75세이상	6,718 (86.2%)	343	781	1,981	2,940	586	87	492

※출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

○ 고령장애인수

(‘25.6.30.기준, 단위:명)

전체	64세 이하	고령장애인					
		합계	65~74세			75세 이상	
			소계	남	여	소계	남
16,905	7,063	9,842	3,792 (38.5%)	2,278	1,514	6,050 (61.5%)	2,688
							3,362

※ 출처 : 행복e음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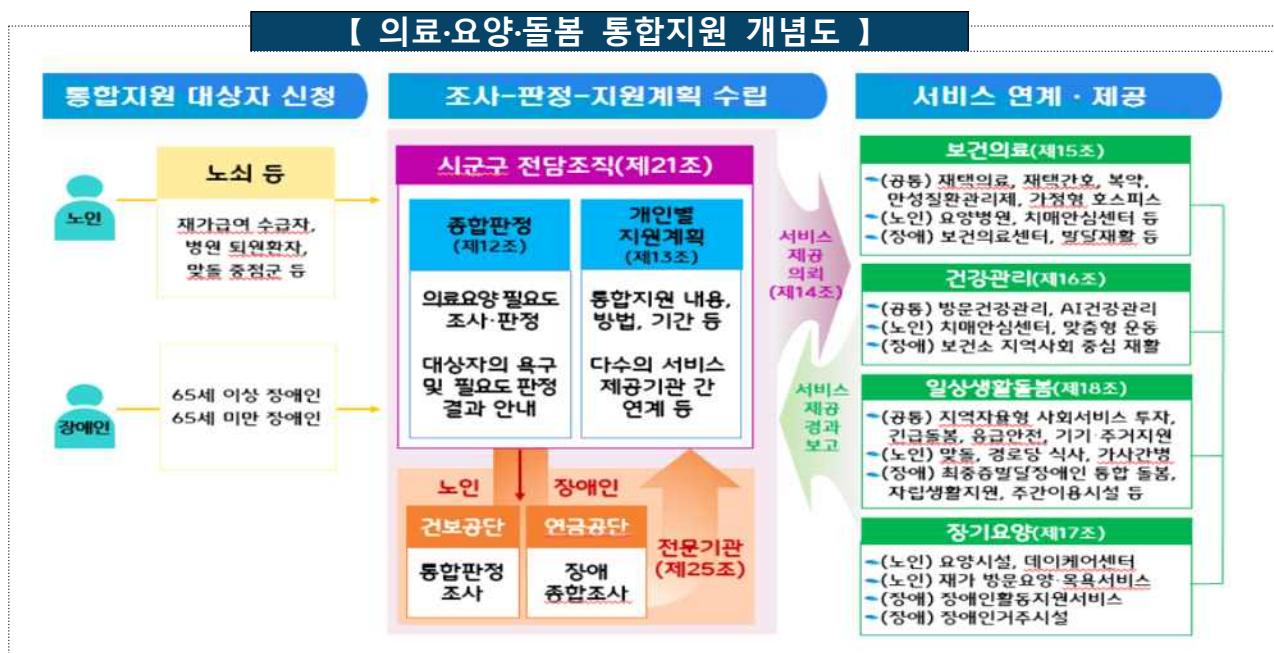
- 성북구 고령장애인은 9,842명으로 전체 장애인수의 58.2% 차지하며, 75세 이상은 6,050명으로 고령장애인의 61.5% 차지함

불임 2

통합지원 제도 개요 [2025. 8.16 보건복지부 보도자료]

- ◆ 「의료·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(돌봄통합지원법)」(24.3월 제정)
→ 現 시범사업(131개 지자체) → 26.3월 법 시행, 전국 적용

- (목적)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(Aging in place)하도록 돌봄지원을 통합하여 제공
- (대상자)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, 장애인 등
- (지원내용) 보건의료(진료, 간호, 재활, 호스피스, 복약지도 등), 건강관리, 장기요양, 일상생활, 가족지원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
- (지원절차) 통합지원 ①신청 → ②조사 → ③판정 → ④지원계획 수립 → ⑤통합지원 제공 → ⑥모니터링
- (기반조성) 통합지원 절차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, 시군구에 전담조직 설치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
 - 전담조직에서 노인, 장애인을 포함하여 통합지원 절차 운영



2

사업 절차

① (신청) 현행 분절적인 요양·돌봄 서비스 신청구조를 읍면동 주민센터, 건보공단 등에서 신청가능 구조로 전환하여 접근성 제고

- 대상자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(읍면동)에 신청서가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

② (조사·판정)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 조사 및 판정을 위해 조사 체계를 전문기관에 업무 위탁

* 노인(국민건강보험공단), 장애인(국민연금공단)

- (노인) 읍면동·건보 지사에서 사전평가를 실시 → 통합판정을 활용하여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 면밀히 파악 → 적정 서비스군 판정

- (^{65세미만}장애인) 장애인 종합판정조사^{*}로 의료·요양·돌봄 필요도 조사 → 조사항목별 평가척도를 통한 서비스 필요도 결정(연금공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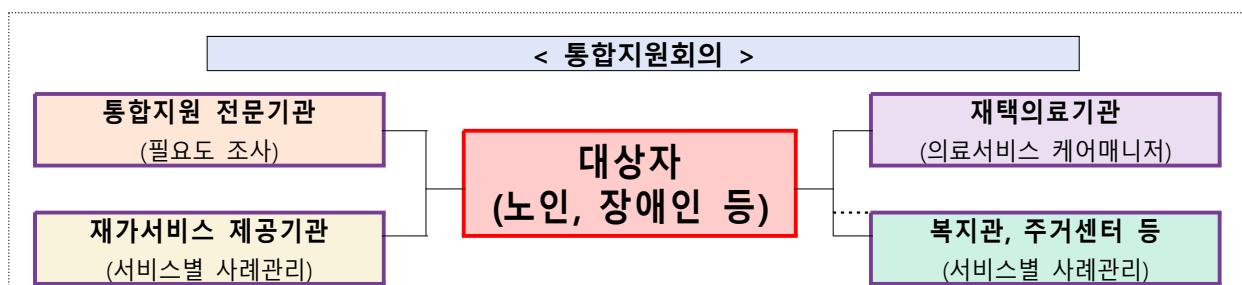
* 보완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활용하여 의료, 건강 등 욕구 확인

** 다만, 65세미만 장애인 통합지원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후 사업진행 예정

③ (계획수립·제공) 수요자 중심으로 필요·제공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·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 (시군구, 읍면동, 건보공단, 서비스 제공기관 참여)

- (역할) 시군구(읍면동)가 마련한 개인별 지원계획 승인 및 변경·종결
 - (계획 승인) 조사 결과·서비스 적합성 논의, 사례회의 등 보완 후 확정
 - (변경·종결) 욕구·상태 변화 확인, 서비스 부적합 시 변경·종결 검토 후 확정

< 통합지원회의를 통한 수요자 중심 지원계획 수립 >



④ (모니터링) 제공기관별 계획에 따라 적절한 의료·요양·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 및 중단사유가 발생시 종결 실시

* (종결 사유 예시) ①사망, ②병원 입원, ③시설 입소, ④중단의사, ⑤욕구 충족